

재산범죄자에 대한 감금형의 대안형벌로서 손해배상(Restitution)에 관한

일반시민과 범죄피해자(Crime Victims)의 수용정도에 관한 연구 *

- 미국 미네소타주 헤네핀 카운티를 중심으로 -

배 임호 **

- I. 서론
- II. 사회사업(사회복지)에 있어서 본 연구가 갖는 중요성
- III. 이론적 배경 : 일반시민의 견해와 공공정책과의 관계
- IV. 조사 연구방법
- V. 자료분석 및 조사 결과
- VI. 결론 및 시사점들

I. 서 론

교도소의 인구과잉 문제는 오늘날 미국의 형사사법체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¹⁾ 이 문제는 지난 수십년동안 교정비용(correctional expenditures)과

*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School of Social Work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활용 요약하였음.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조교수

1) S. D. Gottfredson & R. B. Taylor, "Public policy and prison populations: measuring opinions about reform", Judicature, 68(4-5), 1984 ; S. Gettinger, Assessing criminal Justice need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Research in Brief,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84. ;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Our Crowded Jails: A National Plight,

행형비용(penal expenditures)을 현저히 증가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 교정비용만 하더라도 1977년과 1985년 사이에 두배로 증가되었다.²⁾ 이러한 교도소의 인구과잉 문제는 교도소의 시설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요원의 부족, 또는 재소자들 사이에 있어서의 갈등, 성폭행과 같은 다른 여러 문제들을 연쇄적으로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³⁾ 그러므로 감금(incarceration)을 대신하는 손해배상(restitution)과 같은 대안처벌책이 긴급히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사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교정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손해배상 제도는 매우 유력한 대안처벌책이다.⁴⁾ 그동안 손해배상을 실제의 범죄케이스에 적용시키는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1988.: S.D. Gottfredson & S. McConville, "Introduction". In Stephen Gottfredson and Sean McConville (Eds.), America's Correctional Crisis: Prison Populations and Public Policy, New York, Greenwood Press, 1987.

- 2)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Justice Expenditure and Employment, 1985 (Bulleti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1987(March).
- 3) M.K. Harris, "Strategies, values, and the emerging generation of alternatives to incarceration", Review of Law and Social Change, New York University, 12(1), 1983-84, pp.141-170.
- 4) B. Galaway, Public Acceptance of Restitution as an Alternative to Imprisonment for Property Offenders: A Survey, Wellington, New Zealand, Department of Justice, 1984.: R.B. Coates & J. Gehm, Victim meets Offender: An Evaluation of 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s, The PACT Institute of Justice, PACT Inc., 1985.: J. Gandy, "Attitudes toward the use of restitution". In Burt Galaway and Joe Hudson(Eds.), Offender Restitution in Theory and Action, Lexington, Lexington Books, 1978.: J. Gandy & B. Galaway, "Restitution as a sanction for offenders: a public's view". In Joe Hudson and Burt Galaway(Eds.), Victims, Offenders and Alternative Sanction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80.: J. Doble, Crime and Punishment: The Public's View - A Qualitative Analysis of Public Opinion, The Public Agenda Foundation, 1987.: M. Komarnick & J. Doble, Crime and Corrections: A Review of Public Opinion Data Since 1974, New York, The Public Agenda Foundation, 1986.: M. Joutsen, The Role of the Victim of Crime in European Criminal Justice Systems: A Crossnational Study of the Role of the Victim, Helsinki, Finland, Helsinki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ffiliated with the United Nations, 1987.: D. W. Van Ness, D. R. Carlson, T. Crawford, & K. Strong, Restorative Justice: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제도를 강하게 지지하는 국민여론이 형성 발견되어 왔다.⁵⁾ S. Shaw는 투옥(imprisonment) 대신 범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실시하게 하는 제도에 대하여 영국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발견하였고, J. Doble과 J. Klein은 미국 Alabama에서 역시 유사한 연구결과를 발견하였다.⁶⁾ 특히, 손해배상제도는 다른 종류의 범죄보다도 재산범죄 (property offenses)의 경우에 더 큰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손해배상을 통하여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피해자에게 저지른 잘못을 정정할 수 있는 처벌방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⁷⁾ B. Galaway 역시 1984년, New Zealand 전체 국민을

Theory, Washington, D.C., Justice Fellowship, 1989.; B. A. Schmidt, Victim Offender Mediation: Implementing a Collaborative Justice Model, Unpublished paper written for the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Graduate School of the Wichita State University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dministration of Justice, 1986.; C. W. Colson & D. H. Benson, "Restitution as an alternative to imprisonment", Detroit College of Law Review, 2, 1980, pp. 523-598.; D. Fogel, B. Galaway, & J. Hudson, "Restitution in criminal justice: A Minnesota experiment", Criminal Law Bulletin, 8(7), 1972, pp. 681-691.

- 5) Hickman-Maslin Research, Report Prepared for North Carolina Center on Crime and Punishment Based on a Survey of Registered Voters in the State of North Carolina, Raleigh, NC, North Carolina Center on Crime and Punishment, 1986.; B. Galaway, "Restitution as innovation or unfulfilled promise", Federal Probation, 52(3), 1988, pp. 3-14.; M. Wright, "What the public wants", In Martin Wright and Burt Galaway(Eds.), Mediation and Criminal Justice: Victims, Offenders and Community, London, Sage Publications, 1988.; D. R. Thomson & A. J. Ragona, "Popular moderation versus governmental authoritarianism: an interactionist view of public sentiments toward criminal sanctions", Crime & Delinquency, 33(2), 1987, pp. 337-357.; K. Boers & K. Sessar, "Do people really want punis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ptance of restitution, needs for punishment and fear of crime". In K. Sessar and H. Kerner(Eds.), German Studies on Victims, Offenders, and Public, New York, Springer Verlag, in press.
- 6) S. Shaw, The People's Justice: A Major Poll of Public Attitudes on Crime and Punishment, London, Prison Reform Trust, 1982.; J. Doble & J. Klein, Prison Overcrowding and Alternative Sentences: The Views of the People of Alabama, New York, The Public Agenda Foundation, 1989.
- 7) J. Gandy, 1978, op.cit.

대상으로한 조사연구에서 재산범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는데 대한 암도적인 지지를 발견하였다.⁸⁾ 이러한 행형집행에 관한 여론이나 국민의 지지를 고려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범죄피해자들의 의견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에 범죄피해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피해자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범죄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한층 강경한 처벌 (rougher sentences)을 주장하리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범죄피해자들이 형처법과정에 참여한다면,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을 무겁게 만들 것이라는 가설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여러 조사연구 결과들은 그러한 가설을 가지고 피해자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얼마나 타당할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⁹⁾

이와같은 문헌연구의 결과로써, 본 연구를 위한 두개의 연구질문이 작성되었다. 하나는 '재산범죄자를 위한 감금형 대안적으로서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시민의 수용정도는 어떠한가?'이며, 다른 하나는 '재산범죄자를 위한 감금형 대안적으로서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범죄피해자들의 수용정도는 어떠한가?'이다. 손해배상제도는 강간, 살인, 폭행, 무장강도 등과 같이 개인에게 상처를 입힌 범죄자들에게는 충분할 정도의 중한 형벌이 못 될 수도 있겠지만, 비폭력범죄자들¹⁰⁾이나 재산범죄자들에게는 매우 적절한 처벌책이다.¹¹⁾ 따라서 본 연구는 재산범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산범죄의 의미

J. Gandy & B. Galaway, 1980, op.cit.

8) B. Galaway, 1984, op.cit.

9) D. J. Taylor, K. L. Schepple, & A. L. Stinchcombe, "Salience of crime and support for harsher criminal sanctions", Social Problems, 26(4), 1979, pp. 413-424.; J. J. M. Dijk & C. H. D. Steinmetz, "Pragmatism, ideology and crime control: Three Dutch surveys". In Negel Walker and Mike Hough(Eds.), Public Attitudes to Sentencing: Surveys from Five Countries, Aldershot, Gower, 1988.

10) J. Doble & J. Klein, 1989, op.cit.; S. Shaw, 1982, op.cit.; M. Joutsen, 1987, op.cit.

11) J. Gandy, 1978, op.cit.; A. T. Harland, "Compensating the victims of crime", Criminal Law Bulletin, 1978, pp. 203-224.; D. W. Van Ness,

는, 허락없이 타인의 차량사용, 가게물건 훔치기 (shoplifting), 강도 (burglary), 고의적인 재산상해, 수표의 부정사용 (check fraud), 신용 카드 오용, 그리고 공금횡령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손해배상은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자가 제공하는 금전상의 배상(monetary restitution)이나 개인적 서비스를 통한 배상 (personal service restitution)을 뜻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에서 언급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재산범죄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규정한다면,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을 때보다, 재산범죄자들에 대한 감금형의 감소사용을 일반시민들이 보다 더 수용할 것이다. 둘째, 재산범죄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규정한다면, 재산범죄자들에게 대한 감금형의 감소사용을 수용하는데 있어, 범죄피해자 (crime victims)와 비범죄피해자 (non-victims)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기한 첫번째 연구질문: "재산범죄자를 위한 감금형 대안책으로서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시민의 수용정도는 어떠한가?"와 관련하여, 우리는 재산범죄자들이 손해배상과 같은 적절한 합법적 형벌을 받게 된다면, 일반시민들이 감금형 대신 이러한 대안형벌 (alternative sentencing)을 선호하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가정의 배경으로는 교도소 인구과잉 문제라든가 전통적인 감금형의 비효과성을 고려할 수 있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감금형의 비효과성은 결국, 감금형을 위주로하는 전통적인 형사사법체계가 범죄를 감소시키고

D. R. Carlson, T. Crawford, & K. Strong, Restorative Justice: Theory, Washington, D.C., Justice Fellowship, 1989.; M. Maquire & C. Corbett, The Effects of Crime and the Work of Victims Support Schemes, England, Gower Publishing Company, 1987.; J. Shapland, J. Willmore, & P. Duff, Victim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London, Gower, 1985.

통제하는데 실패하였고, 이로인하여 국민들은 현재의 교정체계 (correctional system)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¹²⁾

손해배상을 감금형과 겸하여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겸하여 사용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중의 하나는 손해배상제도가 부가적인 형벌로 사용될 수 있어서, 결국에 형사사법체계를 확대시켜주는 수단 (a means of widening the net)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체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은 미국 형사사법체계의 개혁노력을 실패로 이끈 이유이기도 하다.¹³⁾ 그러므로 손해배상제도를 감금형과 겸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실체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¹⁴⁾ 손해배상제도는 “부가적인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requires no additional spending)”¹⁵⁾ “감금형을 사용하지 않기위한”¹⁶⁾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손해배상을 감금형과 겸하여 사용될 수 있는 부가적인 처벌책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금형의 대안책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 12) J.Doble, Crime and Punishment: The public's view - a qualitative analysis of public opinion, New York, Edna McConnell Clark Foundation, 1987.; S.D.Gottfredson & R.B.Taylor, 1984, op.cit.; J.Doble & J.Klein, 1989, op.cit.; M.Komarnick & J.Doble, 1986, op.cit.; J.Roberts, Empirical research on sentencing, Ottawa, Ontario,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1988.; M.Maquire & T.Benett, Burglary in a dwelling: The offence, the offender and the victim,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td.
 - 13) J.Austin & B.Krisberg, “Wider, stronger, and different nets: The dialectics of criminal justice reform”,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8(1), 1981, pp.165-196.
 - 14) M.Joutsen, 1987, op.cit.
 - 15) E.A.Fattah, From Crime Policy to Victim Policy: Reorienting the Justice System.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6, p.292.
 - 16) M.Joutsen, 1987, op.cit., p.230.

II. 사회사업(사회복지)에 있어서 본 연구가 갖는 중요성

사회사업가들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와 사회정책 잇슈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특히 그 사회의 관심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소외계층, 또는 그 사회의 약자(disadvantaged people)들의 복지문제와 삶의 질에 대하여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명감을 위하여 사회사업 전문가가 수행하는 주요 역할중의 하나는 사회문제와 잇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정책에 영향을 주거나, 입안하는 일에 기여하는 일이다.¹⁷⁾ 그러나, 대표적인 복지국가라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사회적 관심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교도소의 환경문제이며 그곳에 머무는 재소자들의 삶의 질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교도소의 환경문제는 교도시설의 존립 목적인 “교정”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교도소의 환경문제에 관련한 연구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교도소 인구과잉 현상은 교정시설 내에 매우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재소자들의 생활이 비참하고 재소자들 간에 폭력사태를 유발시키기도 한다.¹⁸⁾ Ingraham과 Wellford는 교도소 인구과잉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결과들을 네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성폭력을 포함한 지속적 폭력사태; 둘째, 재소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질병이 만연되며; 셋째, 교도소내의 생활이 개울러지고 침체되며; 넷째, 사생활이 전무하고 비인간적인 고통을 겪는 일이다.¹⁹⁾

17) N.Cilbert, "Reactions to working statement on purpose of social work", Social Work, 26(1), 1981, pp.88-89.; H.Bisno,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eaching social work methods and skill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undergraduate social welfare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Social Work, 5, 1969, pp.5-17.

18) B.Ingraham & C.Wellford, "The totality of conditions test in Eighth - Amendment litigation". In Stephen D.Gottfredson and S.McConville, America's correctional crisis: Prison populations and public policy, New York, Greenwood Press, 1987.: S.Gottfredson & S.McConville, 1987, op.cit.

더구나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감금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재정이 소요되는데 만일 일반 국민들이 수용할만한 감금형의 대안형벌을 발견한다면, 범죄자들을 감금하기 위해 쓰여지는 경비를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감금형의 대안형벌을 연구함으로써 교도소 인구과잉 문제를 완화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에 영향을 주기위한 의의를 갖고 있으며, 나아가 교도소내 재소자들의 복지와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점에 그 중요성을 갖는다.

19) B. Ingraham & C. Wellford, 1987, op.cit.

III. 이론적 배경 : 일반시민의 견해와 공공정책(Public Policy)과의 관계

본 연구를 통하여 재산범죄자를 위한 감금형의 대안처벌책으로서 손해배상제 도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견해를 파악하고자 하지만, 일부사람들은 일반시민의 견해와 공공정책과의 관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공공정책에 과연 일반시민들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의 견해와 공공정책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정책이란 일반시민의 가치 (values)와 견해를 반영시켜야만 한다. 일반시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고 또한 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를들어 형사사법체계내에서 일반시민의 견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잇슘이다. A.V.Dicey와 같은 법이론가들은 법이 일반시민의 견해에 의존하고 있음을 특별히 강조한다²⁰⁾. 어느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면, 정책입안자들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상 정책입안자들은 일반시민들의 비판을 항상 유념하고 있다.²¹⁾ 이러한 현상은 대표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민주사회的基本전제라고 하는 것은 공공정책에 일반시민의 의지 (public will)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²⁾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대표들은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혹은 자신들의 공적인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경우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근거로서 일반시민의 견해 또는 일반시민들의 가치를 흔히 내세우기도 한다.²³⁾ Page &

20) A.V.Dicey, Lectures on the Relation between Law and Public Opinion in England during the 19th Century, London, MacMillan, 1962.

21) T.R.Dye, Understanding Public Policy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5.

22) S.D.Gottfredson, B.D.Warner, & R.B.Taylor, "Conflict and consensus about criminal justice in Maryland". In Nigel Walker and Mike Hough(Eds.), Public attitudes to sentencing: Surveys from five countries, Aldershot, Gower, 1988.

23) S.Shaw, 1982, op.cit.

Shapiro, Monroe, Lowery et al., Wright et al.²⁴⁾과 같은 조사연구자들은 일반시민의 견해와 실제 공공정책과의 매우 중요한 관계를 그들의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바 있다. 이처럼 일반 시민의 견해와 공공정책의 간밀한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으로는 합의론 (consensus theory)과 민주론 (democratic theory)²⁵⁾을 들 수 있다. 이 두이론에 따르면, 일반시민의 견해와 국민을 대표 하는 지도자의 견해는 서로 공유하는 견해 (shared views)라는 것이다. 특별히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Leslie Wilkins²⁶⁾는 형벌과정에서 일반시민의 견해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일반시민을 형벌의 여러측면과 관련한 합법적 의견을 만들어 주는 제공처로 간주한다. 더군다나 미국 대법원과 의회는 일반시민의 태도가 형벌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²⁷⁾ 그러나, 일반시민의 견해가 어느 공공정책을 설정하는 유일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공공정책의 기반을 형성하고 또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기까지는 다른 고려요인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익집단들, 각 정당의 정책들, 전문가 협회등이 포함된다. 일반시민의 견해라고 하는 것은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가지 요인들 중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
- 24) B. Page & R. Shapiro, "Effects of public opinion on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1), 1983, pp.175-190.; A. Monroe, "Consistency between public preferences and national policy decisions", American Politics Quarterly, 7, 1979, pp.3-19.; D. Lowery, V. Gray, & G. Hager, "Public opinion and policy change in American States", American Politics Quarterly, 17, 1989, pp.3-31.; G.C. Wright, R. S. Erikson, & J.P. McIver, "Public opinion and policy liberalism in the American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4), 1987, pp. 980-1001.
- 25) R.A. Dahl,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P. Devlin, The Enforcement of Mora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P. Page, & R. Shapiro, 1983, op.cit.
- 26) L.T. Wilkins, Consumerist Criminology, London, Heinemann, 1984.
- 27) P.C. Ellsworth & L. Ross, "Public opinion and capital punishment: A close examination of the views of abolitionists and retentionists," Crime & Delinquency, 29(1), 1983, pp.116-169.

IV. 조사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미국 미네소타주 헤네핀 카운티 (Hennepin County)에서 실시되었다. 이 카운티에는 1985년을 기준으로 398,600세대가 살고 있었으며 인구수는 979,700명이었다.²⁸⁾ 이 카운티에는 미네아폴리스시 전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통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인구층이 본 조사연구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모집단은 헤네핀 카운티에 전화를 갖고 있는 시민인데, 일반 시민(통제집단 1,092명: 실험집단 1,085명)의 표본명단은 U.S. West Marketing Resources Company에서 제공하였다. 이 회사는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체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집을 위해 사용된 전화가입자목록 중에서 상업용과 업무용전화 목록은 사전에 제외되었다. 본 조사를 위해서는 실험조사설계(experimental research design)가 사용되었는데, 실험집단은 질문지의 선택지 가운데 처벌방법으로서 손해배상이라는 옵션이 주어지고, 통제집단에게는 이 옵션이 생략되었다. 범죄피해자 집단은 시민들의 범죄피해의 유무에 따라 일반시민 가운데 하위집단으로 분류 형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척도(measures)로는 B.Galaway 교수가 New Zealand에서 작성 사용한 바 있는 질문지²⁹⁾를 사전조사(pre-test)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그리고 사법관료 즉 판사, 검사, 보호관찰관들과의 실증면접을 거쳐 미네소타의 상황에 맞게 개작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완성된 질문지는 우편을 통하여 자료 수집에 사용되었다.

완성한 질문지에는 아래와 같은 여섯개의 실제 재산범죄 케이스가 응답자들에게 주어져, 일차적으로 감금형과 대안형벌중 택일을 하도록 요구되었다. 대안형벌을 택했을 경우, 응답자들은 다섯가지의 옵션이 주어졌는데, 이들은 첫째, 범

28) Bureau of the Census, Estimates of Households, for Counties: July 1, 1985, U.S. Department of Commerce, 1988.

29) B.Galaway, 1984, op.cit.

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둘째, 정부에 벌금(fine)지급: 셋째, 지역사회내의 보호관찰: 넷째, 지역사회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무료봉사업무: 다섯째, 주말을 이용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무료근로봉사이다. 응답자가 해당 범죄케이스에 대안형벌을 결정할 경우, 다섯가지의 옵션중 두가지 이상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실시된 미네소타 주에서는 실제 형벌집행 시 두가지 이상의 대안형벌이 겸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여섯개의 재산범죄 케이스 -

Crime A : 29세의 미혼남자 경리직원이 그의 고용주로부터 \$ 4,643 를 훔쳤다. 전과는 없다. 그는 고용주로부터 해고를 당했는데, 다른 일자리를 얻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

Crime B : 미혼인 18세 남자가 두 친구와 더불어 한주간 동안 3대의 승용차를 훔쳤다. 이들중 2대는 뛰손되지 않은채로 되돌려졌다. 그러나 세번째 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로부터 도주하다 차량사고를 냄에 \$ 909 상당의 손상을 입혔다. 그는 과거에 타인의 차량을 허락없이 사용한 혐의로 4번의 전과가 있다. 현재 그는 직장이 없다.

Crime C : 21세의 미혼 남자가 그의 친구와 더불어 타인의 도난당한 비자카드를 열한번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미네소타의 덜루쓰(Duluth)에서 로체스터(Rochester)까지 여행하는 동안 숙식비로 \$ 808 상당을 그 카드로 인출하여 썼다. 그는 과거에 문서위조, 부정수표사용, 절도, 그리고 도난당한 물건취득으로 6번의 전과가 있다. 그는 건축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Crime D : 20세의 미혼남자가 문을 열고 두달에 걸쳐 4개의 회사건물을 침입하였다. 되돌려주지 않은 물건값과 문에 입힌 손상을 계산하면 \$ 788 이다. 그는 강도 3번, 절도 2번, 고의적인 재산상해등 모두 6차례의 전과가 있다. 현재 그는 직장이 없다.

Crime E : 미혼 20세의 남자가 잠기지 않은 출입문과 창문을 통해 4 가정에

침입하여 \$ 902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쳤다. 이들 가운데 어느 것도 반환되지 않았다. 그는 4차례의 강도와 3차례의 절도로 모두 7차례의 전과가 있다. 현재 그는 육류가공회사에 다니고 있다.

Crime F : 21세의 미혼 남자가 가게들로부터 옷과 물건들을 6차례 훔쳤다. 되돌려주지 않은 상품들의 가격은 \$ 738 이다. 그는 가게에서 행한 절도행위로 인하여 2차례의 전과가 있다. 현재 그는 직장이 없다.

V. 자료분석 및 조사결과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유용한 질문지는 1,314개 였다(통제집단은 668개, 실험집단은 646개). 전반적인 회수율은 60.4%이었는데, 통제집단이 61.2%, 실험집단은 59.5%이었다.

인구통계적인 측면에서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을 헤네핀 카운티의 인구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남자의 과다수가 참여하였으며 (overrepresented), 여자와 젊은층은 카운티의 인구분포보다 훨씬 적은 수가 참여하였다. 이런 현상은 전화가입자 목록을 사용하는 조사연구의 경우 흔히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전화가입을 신청할 때 가족구성원의 이름을 모두 쓰기보다는 남자이름을 기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젊은층은 활동적이고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 전체인구 구성원보다 적은 숫자가 사회조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는 반대로, 장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젊은층보다는 한층 더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카운티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여러 세부계층의 대표성과 관련된 잇슈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응답결과를 비교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이들 두 집단이 무작위로 추출되고 또 한 무작위로 두 집단중 하나에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 두 집단의 동질성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각 집단의 나이를 중심으로 T-Test를 실시하였다. 그결과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significant) 않았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은 동등하다는 사실에 도달하였다.

<표1>에서 보는 바와같이 나이, 성별, 인종적 배경의 합계는 각각 다른데, 이는 응답자들 가운데 응답하지 않고 공백으로 남겨놓은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표1〉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나이, 성별, 인종적 배경

구분	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1980 인구통계
				헤네핀 카운티(18세이상)
나 이 :				
18 - 29	17 % (112)	18 % (114)		34 %
30 - 39	28 % (185)	26 % (164)		20 %
40 - 49	18 % (119)	18 % (112)		13 %
50 - 59	13 % (83)	14 % (88)		13 %
60 +	24 % (154)	25 % (155)		20 %
합 계	100 % (653)	100 % (633)		100 %
성 별 :				
여	38 % (250)	37 % (240)		53 %
남	62 % (462)	63 % (405)		47 %
합 계	100 % (662)	100 % (645)		100 %
인종적배경 :				
미국 인디언	0.5 % (3)	1 % (4)		1 %
아시아인, 태평양설지역	1 % (8)	1 % (9)		1 %
흑 인	2 % (14)	2 % (15)		4 %
백 인	96 % (633)	95 % (601)		94 %
기 타	0.3 % (2)	1 % (7)		1 %
합 계	100 % (660)	100 % (636)		100 %

교육정도 :			
(25세이상)			
고등학교미만	2 % (12)	2 % (12)	9 %
고등학교 중퇴	3 % (19)	4 % (25)	9 %
고등학교 졸업	14 % (90)	14 % (90)	36 %
대학교 중퇴	36 % (233)	40 % (255)	21 %
대학교 졸업	29 % (189)	23 % (148)	14 %
대학원 / 전문특수학교	17 % (112)	17 % (109)	11 %
합 계	100 % (655)	100 % (639)	100 %

<표2> 일반시민들의 범죄피해 경험의 유무

범죄피해 경험	통제집단	실험집단
없음	86 % (562)	86 % (546)
있음	14 % (93)	14 % (90)
합계	100 % (655)	100 % (636)

() = 실제빈도

1. 일반시민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비교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카이자승검증 (χ^2 -test)을 사용하였고 영가설 (null hypothesis)을 부정하는 유의수준은 0.05 (alpha = 0.05)를 기준하였다. 앞에서 설정한 첫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시민의 두 집단, 즉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응답결과를 비교하였다. 카이자승 검증 결과의 P-value들은 <표3>과 같다.

응답자들에게 제시되었던, 6개 범죄사건 전체에 있어서, 실험집단보다 통제집단에 있는 많은 일반시민들이 해당범죄자들에게 감금형을 선택하였다. 범죄사건 6개 가운데 다섯개 (A, B, C, E, F) 사건의 경우 두 집단간의 차이는 4%에서 9%에 이르는데, 이들의 차이는 통계적인 유의수준(statistical significance)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사건 D의 경우, 두 집단간의 차이는 근소한 차이로 유의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두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수준에 달한 범죄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발견된 차이들이 표집오차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다.

<표3> 일반시민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비교

* 통제집단과 실험집단간의 유의한 차이 (signigicant difference).

() = 실제빈도

범죄사건	통제집단	실험집단	P-value (1-tailed)
Crime A	12 % (78)	8 % (51)	.0109*
Crime B	65 % (424)	59 % (376)	.0264*
Crime C	70 % (463)	61 % (387)	.0006*
Crime D	77 % (513)	74 % (471)	.0971
Crime E	74 % (488)	67 % (423)	.0026*
Crime F	54 % (354)	48 % (300)	.0177*

P-value는 χ^2 -test 결과임 : 위의 표에는 응답자가 각 범죄사건에 감금형을 선택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음.

6개 범죄사건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응답을 응답자들의 성별, 나이, 교육정도, 인종적 배경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이와같은 변수들이 각 범죄사건의 경우 두 집단간의 원래의 관계 (initial relationshi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표4>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범죄 6건 중 5개 (B, C, D, E, F)에서 여자응답자간의 차이정도는 충분히 크다. 그렇지만 범죄 B, D, E 및 F의 경우, 남자응답자간의 차이정도는 의미있는 정도로 크지 않다. 범죄 A와 C에 있어서 남자응답자들간의 차이는 유의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 결과들은 교도소 사용감소를 위한 대안처벌책으로서 손해배상책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수용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범죄사건 D의 경우, 원래의 관계는 유의 (significant) 수준에 달하지 않았는데,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여자응답자들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흥미롭게도 <표4>의 모든 칸 (cell)에서 보는 바와같이, 두 집단 모두에서 여자들보다 더 큰 비율의 남자응답자들이 6개 전체 범죄사건에 감금형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처벌적 (punitive)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표4>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덜 처벌적이며, 손해배상을 보다 더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1>과 <표4>에서 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여자의 비율이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3>에서 나타난 두 집단간의 차이는 최저수준

으로 나타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 인구분포에서 여자인구가 차지하는 정도만큼, 더 많은 여자응답자가 본 연구에 참여했더라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차이는 <표3>에서 나타난 것보다 실제로는 더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표4> 성별로 구분한 일반시민 두 집단의 비교

	통제집단	실험집단	P - value (1 - tailed)
Crime A+ - 여자	10 % (24)	7 % (16)	.1154
남자	13 % (53)	9 % (35)	.0273*
Crime B+ - 여자	61 % (151)	51 % (121)	.0126*
남자	67 % (271)	64 % (255)	.1981
Crime C+ - 여자	68 % (168)	55 % (129)	.0019*
남자	71 % (290)	65 % (258)	.0354*
Crime D - 여자	75 % (186)	68 % (161)	.0423*
남자	79 % (323)	78 % (310)	.3795
Crime E+ - 여자	73 % (181)	61 % (143)	.0015*
남자	74 % (301)	70 % (280)	.1394
Crime F+ - 여자	51 % (126)	40 % (94)	.0096*
남자	55 % (225)	52 % (206)	.1974

* 통제집단과 실험집단간의 원래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 (signigicant difference).

* 통제집단과 실험집단간의 유의한 차이.

() = 실제빈도

P-value는 χ^2 -test 결과임 : 위의 표에는 응답자가 각 범죄사건에 감금형을 선택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음.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표 1>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분된 교육정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정도를 고등학교와 대학이상 (대학중퇴 포함)으로 구분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반응에 다소 차이를 발견하

였다. 다시 말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처벌적이었지만 이들은 교도소사용을 감소시키는 대안 처벌책으로서 손해배상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응답자들의 나이와 인종적 배경에 관해서는, 이들 변수가 응답자들의 수용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없는 정도였다.

〈표 5〉 교육수준으로 구분한 일반시민 두집단의 비교

	통제집단	실험집단	P - value (1 - tailed)
Crime A + 고등학교 대학이상	14 % (17) 11 % (60)	11 % (14) 7 % (36)	.2425 .0091 *
Crime B + 고등학교 대학이상	65 % (77) 65 % (339)	60 % (75) 60% (300)	.2483 .0516
Crime C + 고등학교 대학이상	69 % (81) 70 % (370)	61 % (76) 62 % (311)	.1155 .0050 *
Crime D 고등학교 대학이상	73 % (86) 78 % (417)	73 % (91) 75 % (378)	.4647 .1089
Crime E + 고등학교 대학이상	67 % (80) 75 % (396)	61 % (76) 69 % (345)	.1673 .0126 *
Crime F + 고등학교 대학이상	49 % (59) 55 % (291)	49 % (91) 48 % (239)	.4983 .0133 *

+ 통제집단과 실험집단간의 원래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 (signigicant difference).

* 통제집단과 실험집단간의 유의한 차이.

() = 실제빈도

P-value는 χ^2 -test 결과임 : 위의 표에는 응답자가 각 범죄사건에 감금형을 선택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음.

2. 비범죄피해자 vs. 범죄피해자

비범죄피해자 집단과 범죄피해자 집단을 비교하기 전에, 범죄사건의 종류에 따라, 감금형을 대신하는 대안처벌책에 대한 피해자들의 수용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체크하였다. 그 결과로 재산범죄, 비재산범죄, 폭력범죄, 비폭력범죄등으로 분류한 범죄의 종류에 따르는 피해경험이 자신들의 수용정도에 유의수준의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들이 경험한 범죄사건의 종류에 의하여 피해자들을 세분하지 않고 전체를 한 집단으로 비범죄피해자 집단과 그들의 수용정도를 비교하였다.

통제집단에서 비범죄피해자와 피해자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범죄사건 6개 가운데 2개 (Crime D와 E)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통제집단의 피해자들보다 더 많은 비범죄피해자들이, 6개의 범죄사건 전체에 있어 일관성있게 감금형을 택하였다. 이 사실은 비피해자들이 피해자들보다 6개의 범죄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한 층 처벌적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보겠다. 이와같은 발견사항들은 비범죄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라는 옵션이 주어진다면, 비피해자들은 피해자들보다, 감금형으로부터 손해배상으로 그들의 의견을 바꿀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다시말해서, 비범죄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자들보다 더 감금형에 대한 대안처벌책으로서 손해배상을 한층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6〉 비범죄피해자 집단과 범죄피해자 집단의 비교

범죄사건	비 피해자	피해자	P - value (2 - tailed)
Crime A			
통제집단	13 % (70)	7 % (6)	.0948
실험집단	8 % (41)	11 % (10)	.2412
Crime B			
통제집단	66 % (364)	59 % (52)	.2362
실험집단	60 % (319)	56 % (50)	.5402
Crime C			
통제집단	71 % (395)	66 % (59)	.4172
실험집단	61 % (325)	63 % (55)	.7702
Crime D			
통제집단	79 % (443)	69 % (62)	.0306*
실험집단	73 % (394)	77 % (68)	.4396
Crime E			
통제집단	76 % (421)	63 % (57)	.0154*
실험집단	66 % (356)	68 % (59)	.7232
Crime F			
통제집단	55 % (308)	44 % (40)	.0576
실험집단	48 % (258)	43 % (37)	.3618

* 비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간의 유의한 차이 (signigicant difference).

() = 실제빈도

P-value는 χ^2 -test 결과임 : 위의 표에는 응답자가 각 범죄사건에 감금형을 선택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실험집단에서는 비피해자와 피해자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범죄사건 B와 F의 경우에는 실험집단에 있는 피해자보다 더 많은 수의 비피해자가 감금형을 선택하였다. 이에반하여, 실험집단의 피해자보다 더 적은 분포의 비피해자들이 범죄사건 A, C, D, E에서 감금형을 추천하였다. 아울러, 손해배상이라는 형벌 옵션이 주어졌을 때, 소수의 피해자들이 범죄사건 B, C, F의 경우 감금형에서 손해배상으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반면, 그들은 범죄사건 A, D, E의 경우에 손해배상으로부터 감금형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보아, 범죄피해자들은 감금형의 대안형벌책으로서 손해배상을 수용함에 있어 다소 망설이는 상태로 해석된다.

VI. 결론 및 시사점들

본 연구는 재산범죄자들을 감금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는 대안형벌책으로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도소의 인구과잉 문제가 오늘날 미국 형사사법체계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도소의 인구과잉 문제가 미국 헌법규정에 어긋나는 일일 뿐아니라, 교도소 내의 폭력사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거나 재소자들의 생활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들이 자주 언급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잇슈들에 대한 조사연구는 거의 되고 있지 않다. 교도소의 인구과잉 현상이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한 깊이있는 조사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본 연구 결과는 재산범죄자를 처벌할 때, 교도소 사용을 감소시키는 대안형벌로서 손해배상책에 대한 일반시민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부가적으로, 일반시민들은 재산범죄자들이 주정부나 지역사회에 손해배상을 이행하는 것보다는 범죄피해 당사자에게 이행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였다.

과거의 범죄피해 경험이 형처벌에 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이 비피해자들보다 오히려 덜 처벌적이라는 사실이 의외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범죄피해자가 형처벌과정에 참여한다면 범죄자가 받는 형벌이 가중되리라는 가설은 반증되었다. 단지 범죄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이라는 대안처벌책을 쉽게 수용하리라고는 사료되지 않는다. 때문에 범죄피해자들이 손해배상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될 만한 잇슈들, 예를들면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을 과연 어느 정도나 성공적으로 이행할 것인가' 등의 과제가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반시민과 범죄피해자들의 감금형에 대한 대안형벌로서 손해배상책에 대한 높은 지지가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되었는데, 이는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재산범죄자를 위한 손해배상제도를 입법화 하는데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재산 범죄자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정책으로 입안이 되면 교도소의

인구과잉현상은 현저히 완화될 수 있으며 또한 재소자들의 생활환경이 상당수 준 개선되리라고 사료된다. 예를 들어 1987년 한해동안, 미네소타주에서 보고된 전체 범죄 가운데 재산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62.1%에 달하기 때문이다.³⁰⁾

재산범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정책적으로 입안된 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손해 배상 프로그램 (restitution programs)이 설치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범죄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즉, 범죄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회사업가는 중재자(mediator)로서, 양측을 도울 수 있다. 사회사업실천가는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반면에, 범죄자에게는 형벌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요건들과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그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정기관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는 보호관찰업무에 오랫동안 관여해 오고 있으므로, 적합한 케이스마다 보호관찰관으로서 손해배상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사업실천상의 시사점이 있다. 사회사업가는 손해배상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통하여 범죄자의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노력도 요구된다. 또한 재산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정규적인 형벌책으로 채택될 경우, 더 많은 사회사업실천가들이 중재자로서 교정 및 형사 사법체계에서 요청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정·사법분야에서 필요 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사회사업 교육 및 훈련과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0) Minnesota Sentencing Guidelines Commission, Summary of 1988 sentencing practices for convicted felons, Minnesota, MN Sentencing Guidelines Commission, 1990.